

한국금속탱크공업협동조합

우 14354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99번길 27(일직동 504-1) /전화 02-2632-1580-1 /전송 02-2632-1588
E-mail : kmtic02@gmail.com

차장 : 박은주

문서번호 금사 제16-212호
시행일자 2016. 11. 03. (년)
경 유
반 음 국민안전처 장관
참 조 소방제도과장

보존기간		이 사 장
공개여부		
전무이사		/
차 장		
과 장		
		협조
기 안 자		

제 목 소화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시행 유예기간 연장 건의

1. 귀 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2015. 7. 24) 제 9조의2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이 2015. 11. 30 제정되어 2016. 1. 25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4. 2017. 1 .24까지는 건축허가 동의시 내진설계 기준 설계로서 제출치 못할 경우는 소방시설의 착공신고시까지 제출토록 유예하고 있습니다.

- 문 제 점 -

1) 소화수조 및 음용수 물탱크(현재 주로 같이 사용하고 있음)의 지진발생시 슬로싱으로 인한 수조와 방파판의 충격력 계산방법이 아직 없으며, 바닥면에 수조 고정방법 또한 구체적이지 못하여 이로인한 구조 안전성의 객관적 검증이 어렵고 구조기술사, 소방시설 설계업자가 확인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으며, 소화수조를 별도로 설치 할 경우에도 수질오염에 의한 스프링클러 등의 막힘의 우려가 있습니다.

2) 설계후 내진성능에 대한 실험방법 등이 없어서 관련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건축설계시 STS, SMC, PDF등 탱크를 회피하고, 오히려 과거에 위생상

문제가 있었던 본체 부착형 콘크리트탱크로 회귀할 우려마져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려고 각 협동조합 단체등이 별도 용역을 체결하려고 모색하였으나, 중소기업의 영세성 등으로 비용마련이 쉽지 않고, 설사 그 결과가 도출 된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판단할 때 이의 집단의 용역으로서 객관성이 결여 된다고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4)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객관성있는 용역등 결과를 산출하여 기준을 마련하여 조속히 지침을 내려 주셔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 건 의 사 항 >

소화수조 및 음용수 저장조의 내진설계 제반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될때까지 전면 시행을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금속탱크공업협동조합

이 사 장 이 호 석